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정 2008. 12. 01. 개정 2010. 07. 01.

개정 2012. 06. 18. 개정 2016. 10. 31.

개정 2022. 09. 19. 개정 2022. 12. 14.

개정 2024. 10. 0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공정거래 자율준수 범위와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주식회사 포스코와이드(이하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임직원이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이하 "자율준수"라 한다).
- ② “공정거래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법령을 말한다.
-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 감독 등 회사 내부의 준법 시스템을 말한다(이하 "CP"라 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란 회사 임직원 중 CP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전반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자를 말한다.
- ⑤ “자율준수협의회”란 자율준수관리자를 자문하고 담당부문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 감독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 ⑥ “담당부문”란 자율준수협의회 위원별 자체 점검을 실시, 감독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 ⑦ “CP 주관부서”란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여 CP 업무를 주관하여 실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⑧ “자율준수편람”란 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으로써 공정거래 법규, CP 운영, 자율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된 자율준수 매뉴얼이다.

제2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1절 자율준수관리자

제4조(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과 해임)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 또는 해임 하고 사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관여되어 있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해임할 수 있으며 임직원과 사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본 조 제3항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 CP 주관부서장이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새로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①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 ②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평가 및 운영현황 보고
- ③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업무에 대한 임직원 교육
- ④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활동 계획과 상황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 ⑤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협조 및 지원
- ⑥ 기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제6조(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는 CP운영 책임자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① 공정거래법 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및 조사
- ②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 출석 및 진술요구
- ③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 요구
- ④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제7조(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보장)

-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업무수행 중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업무수행 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 ③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④ 회사는 본 지침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자율준수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

제2절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조직

제8조(CP 주관부서 구성)

- ① CP 주관부서의 직원은 입사 2년 이상자로서 CP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자로 보한다.
- ② 전항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CP 주관부서 직원으로 보할 수 없다.
 - 1. 징계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 3.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
- ③ CP 주관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요청에 의한다.
- ④ CP 주관부서 직원은 법령 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CP 주관부서의 역할)

- ① 자율준수 기본방침 설정,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제재 등과 관련되는 필요사항 권고, 자문
- ② 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실시 및 감독, 그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보
- ③ 조사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상정 및 시정요구
- ④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서간의 업무 마찰 조정

제10조(자율준수협의회의 구성)

- ① 자율준수협의회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과 공정거래 실천리더로 구성한다.
- ②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인 자율준수관리자와 공정거래와 관련된 부서의 선임부서장으로 구성한다.
- ③ 공정거래 실천리더는 사업부서 및 지원부서의 자율준수 활동을 위해 해당부서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단, 본 자율준수협의회의 구성은 자율준수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④ CP 주관부서장은 간사로서 자율준수협의회 실무운영을 총괄한다.

제11조(자율준수협의회의 운영 및 역할)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연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고, 2인 이상의 구성원 요구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1.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제재 등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의 심의 및 필요사항 권고, 자문
 - 2.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서간의 업무 조정
 - 3. 위원별 담당부문의 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실시 및 감독, 그 결과를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보고

4. 각 위원별 담당부문의 자율점검에 대한 감독
5. 기타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 자문

제12조(자율준수협의회 위원과 공정거래 실천리더의 역할)

- ①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관리자 지원
 2. 공정거래 실천리더를 지휘 감독하여 소속 부서 CP 운영
 3. 소속 부서의 CP 교육 참여 독려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법 위반 예방
 4. 소속 부서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리스크 및 CP 운영 개선사항 발굴
- ② 공정거래 실천리더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자율준수활동 지원
 2. 소속 부서의 공정거래 관련 상담 및 자문
 3. 소속 부서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 점검 및 CP 주관부서에 결과 통보
 4. 소속 부서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시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주관부서에 통보

제13조(하도급 상생협력 위원회의 운영)

- ① CP 주관부서는 하도급 상생협력 위원회의 운영 주관부서이다.
-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하도급 상생협력 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3절 대표이사 및 임직원

제14조(대표이사의 역할)

-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효과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보고받을 경우 제발방지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 등을 지시하고 필요시 관련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임직원의 의무)

- ①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CP 주관부서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임직원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CP 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3장 CP의 운영

제1절 CP의 운영

제16조(자율준수 의지선언)

-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CP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 의지를 선언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의 자율준수 의지는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제17조(CP의 운영)

- ① CP 주관부서는 CP의 실행에 필요한 계획을 작성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며, CP 활동 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② CP 주관부서는 CP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관련문서를 현업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는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18조(자율준수편람의 작성·배포)

- ① CP 주관부서는 임직원들이 실제 업무수행의 지침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율준수편람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편람은 CP 주관부서가 판단하여 임직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며, 주기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프로그램 운영)

- ① CP 주관부서는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안내한다.
 1. e-러닝 과정을 이용한 on-line 교육
 2. 각 부서별, 계층별 특성에 맞는 off-line 교육
 3. 대면, 온라인, 업무시스템 게시 및 팝업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4. 기타 직원들의 공정거래 준수마인드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
- ② CP 주관부서는 교육별 의무 수강부서 또는 대상을 선정하여 공지할 수 있으며, 교육 후 수강 현황을 부서장에게 통보토록 한다.
- ③ CP 주관부서로부터 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임직원들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④ CP 주관부서는 교육 후 피교육자의 이해도, 만족도, VOC, 참석율 등을 통해 효과성평가를 실시한다.
- ⑤ 교육을 하는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정한다.
 1. 사외강사는 법무법인, 전문기관 등에서의 공정거래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2. 사내강사는 공정거래 관련 업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CCP) 2급 이상 소지자
 3. 사외 공정거래 전문교육기관 강의 수료 1회 이상인 자

제20조(문서관리)

- ① CP 주관부서 및 회사 임직원들은 공정거래 관련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②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되어야 한다.
- ③ 기타 문서관리 사항은 사내 문서규정에 따른다.

제21조(위험성평가의 실시) CP 주관부서는 부서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리스크 평가 및 적절한 통제를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① 위험성 평가는 반기 1회 실시하고, 리스크 등급은 '주요리스크', '주의', '관심' 3단계로 구분하며, 리스크 등급이 '주의' 이상의 경우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제22조(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조사)

- ① CP 주관부서는 자율점검이 부진한 부문 또는 부서에 대해 공정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수감부서는 CP 주관부서의 모니터링 및 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 ③ CP 주관부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 및 경영층에 보고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CP 주관부서 직원은 모니터링 활동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 점검 기준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3.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4. 모니터링 및 조사 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대상자 또는 부서의 업무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5. 조사 과정에서 권위적, 고압적 자세를 삼가고, 친절하고 겸손한 언행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6. 조사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CP 운영성과 평가)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필요시 개선, 보완한다.
- ②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4조(상담 및 신고)

- ① CP 주관부서는 부서 내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상담 할 수 있는 상담인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 ② 각 부서 공정거래실천리더 또는 업무 담당자는 자율점검 시 해당 업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CP 주관부서에 상담을 의뢰 해야한다.
- ③ 상담요청인은 상담 전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Check list를 통한 자율점검을 先 실행한 후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상담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담신청을 접수한날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내용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상담인은 필요시 관련 정부부처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상담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 ⑥ 자율점검 Check list를 통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였거나 상담인과 상담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모니터링을 면제하거나 제재를 경감할 수 있다.
- ⑦ 상담인은 현업부서에서 상담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⑧ 임직원들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이를 CP 주관부서에 신고 해야 한다.
- ⑨ 상담인 및 CP 주관부서는 상담을 의뢰한 자나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신고한 자가 신분노출을 원하지 않을 때는 신분 및 상담·신고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및 직원 포상

제25조(징계사유) 취업규칙 제59조 및 상벌규정 제15조에 정한 사항을 따른다.

제26조(징계요구)

- ① CP 운영지침 및 공정거래관련 법규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인지한 부서책임자가 징계 주관부서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부서책임자는 위반사실을 CP 주관부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양정기준) 상벌규정 제21조에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28조(특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징계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상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인센티브)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를 성실하게 실천하였다고 평가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인사업무 담당부서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 1. CP점검 우수 조직
 - 2. 자율준수협의회 우수 위원 및 공정거래 실천리더
- ② 포상 기준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사규의 상벌규정을 따르며, 자율준수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 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0월 7일부로 개정, 시행한다.